

학술지 편집 및 발간세칙

소관부서 : 정책연구부

제정 2015. 08. 17
개정 2016. 08. 30
개정 2018. 04. 30
개정 2019. 04. 19
개정 2020. 07. 28
타법개정 2020. 12. 04
개정 2022. 04. 14
개정 2022. 08. 17
개정 2025. 02. 10
개정 2025. 04.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研究院)”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부동산분석」 등 학술지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4>

제2조(적용원칙)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및 선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한 원내외 편집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4.19>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 1인과 원외 편집위원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③ 원내 편집위원은 연구원장을 제외한 2인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원외 편집위원은 대학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그와 대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역, 대학, 전공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출한다.

⑤ 원외 편집위원장은 원외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간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4.1>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5.4.1>

1.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2.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중재
3.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4.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5. 게재순서의 결정
6. 학술지 발행부수의 결정
7. 사이버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8.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이 세칙 및 「학술지 연구윤리세칙」에서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③ 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하고,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4.1>

④ 편집위원 및 간사는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임기) ① 원내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② 원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4.1>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4.19, 2025.4.1>

③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1인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④ 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 2인이 공동의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 1인 부재 시 다른 1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2.10>

제7조(회의비 및 자문비<개정 2019.4.19>) 회의에 참석한 원외 편집위원에게 「자문비 등 지급세칙」을 준용하여 회의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9>

제3장 심사위원

제8조(선정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할 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심사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4.1>

③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④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1차 독촉한다. 1차 독촉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자격) 심사위원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부동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평균 1회 이상의 저서 발간 경력 또는 연구발표 경력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5. 그 밖에 위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분야의 다른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8.30, 2020.12.4>

③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속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4.1>

제11조(심사비)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원외 심사위원에게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9>

제4장 논문의 심사 <개정 2025.4.1>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창의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자료의 신뢰성
5.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의뢰는 투고자의 신상 및 인적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후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함께 본인이 심사한 논문심사판정 결과 및 근거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별표 4의 양식)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별표 5의 양식)를 투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2022.4.14>

④ 삭제<2022.4.14>

⑤ 심사절차는 별표 1에 따라 진행한다.<개정 2022.4.14>

제14조(심사기간) ①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차심사(15일 이내)와 2차심사(7일 이내)를 포함하여 심사 의뢰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4.1>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③ 삭제<2025.4.1>

④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1차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논문 수정기간) ① 논문수정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간 일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② 삭제<2025.4.1>

③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개정 2025.4.1>

④ 투고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호로 이월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4.1>

⑤ 제4항에 따라 이월 신청을 받은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호로 논문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5.4.1>

제16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최종판정 대상이 된다.
2. '수정 후 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심사답변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심사답변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판정은 1차에 한하며 또 다시 재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제17조(1차심사) ① 1차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판정하며, 심사판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2.4.14>

②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악(次惡)판정 원칙에 의해 판정한다. 단, 나머지 두 심사 결과가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재심으로 판정한다.<개정 2025.4.1>

③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개정 2025.4.1>

④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제18조(2차심사) ① 2차 심사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단,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② 전항이외에 2차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최종심사 판정) ① 최종판정은 1,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4.1>

② 전항의 최종판정 대상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이상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한다.<신설 2025.4.1>

제20조(이의신청)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③ 투고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제5장 투고, 접수, 발간

제21조(투고논문의 범위) ① 「부동산분석」 등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 한다.

② 모든 논문은 「학술지 연구윤리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단, 제출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개정 2025.4.1>

③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④ 논문은 별표 2의 논문투고 신청서, 별표 3의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별표 7의 연구윤리서약서, 별표 8의 특수관계인 공저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단,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등을 사용한다.<개정 2018.4.30, 2020.7.28, 2022.4.14, 2022.8.17, 2025.4.1>

제23조(논문저자표기) ①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교신저자(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② 최종판정 대상 논문의 저자는 투고 시와 동일해야 하며,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

자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4.1>

제24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의 투고는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4.14>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한다.

③ 투고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 간사는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4.1>

④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작성형식과 제21조의 준수여부를 예비심사한 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개정 2025.4.1>

⑤ 예비심사 결과 논문작성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1조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 및 완성도가 심히 미달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반려사유서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4.30>

제25조(논문의 게재) ① 삭제<2025.4.1>

② 논문은 심사완료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최종판정 시 논문의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할 수 있다.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④ 삭제<2025.4.1>

⑤ '게재불가'로 최종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은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4.1>

⑥ '게재가'로 최종판정된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1>

⑦ '게재가'로 최종판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4.1>

제25조의2(연구장려금) 게재된 논문에 대해 주저자 기준으로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4.1>

제26조(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① '게재가'로 최종판정된 논문은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4.1>

②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및 카피 킬러채널 등을 활용하며,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내 전문가위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7조(발간 및 배포) ①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4월 30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발간월 또는 발간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4.19>

② 학술지의 발간부수와 배포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제정>

이 세칙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0>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0>

이 세칙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9>

이 세칙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이 세칙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4>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14>

이 세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17>

이 세칙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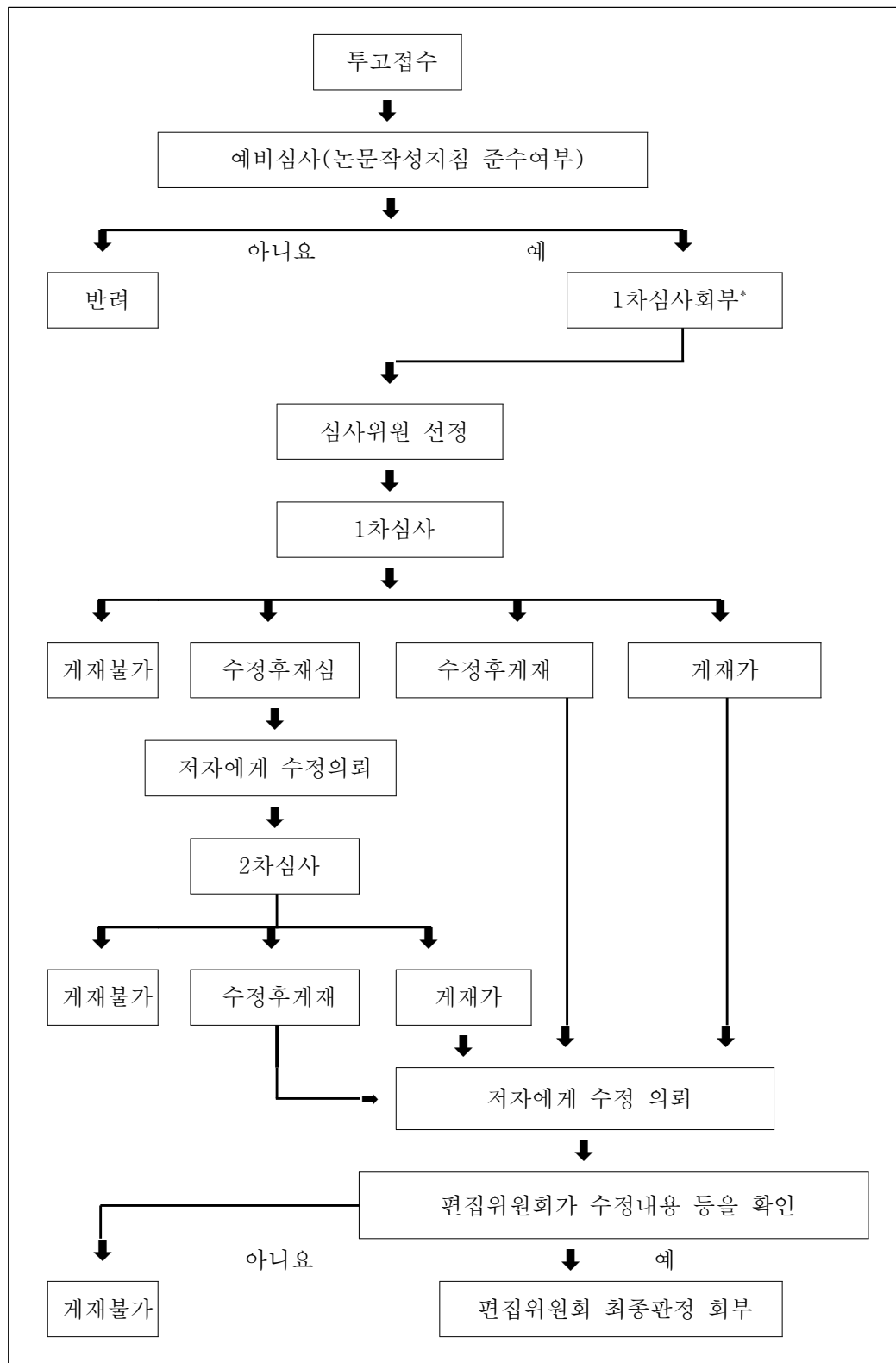
부칙<2025.2.10>

이 세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1>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절차



* 논문심사는 논문접수 마감 후 일괄 진행

[별표 2]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투고 신청서

※접수번호	※논문 접수일	※논문게재일.호	년 권	월 호
-------	---------	----------	--------	--------

[illegible]

※ 란은 채우지 마십시오.

원고내용요약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별지를 사용하되, 신청서를 포함해 2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연구의 경우, 본 신청서를 각 연구자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간행물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물을 학술지 발간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복사·전송 포함)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다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름).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속 / 직위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주저자		/			
교신 저자		/			
공동저자 1		/			
공동저자 2		/			

[별표 4] 게재신청 논문 심사의견서

「부동산분석」 게재신청 논문 심사의견서

제 목						
분 야	(이론, 응용) :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기타					
심 사 기 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논문초록(영문, 국문)의 질적 수준						
○ 논문제목의 적절성 심의 : 적절함 () 수정보완 필요 () 사유 및 수정 의견 :						
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구체적인 기술을 요약, 필요시 별지 이용)						
1차 판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2차 판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결과통보서

먼저, 저희 학술지 「○○○○○」에 귀하의 연구논문을 투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논문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
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면밀
히 검토하였습니다. 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
판정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되오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심 사 결 과 : 00000

2. 별 첨 : 심사의견서 1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논문심사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
○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X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
○	△	X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	X	수정후재심
○	X	X	게재불가
△	X	X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 : 게재가/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 X : 게재불가

연구윤리서약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귀중

연구자는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하여 아래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저자(들)는 학술지 「부동산분석」의 연구윤리규정을 인지하고,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학술지 「부동산분석」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이중투고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한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는 행위
 - 6) 중복게재 :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
 - 7) 재투고 :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
 - 8)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연구 참여에 관해 부정으로 기재함으로써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하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한다.
 - 1) 저자가 투고한 논문은 내용이나 기법 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 2)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 3)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4)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 직 위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주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1		/			
공동저자 2		/			

특수관계인 공저여부 확인서

1. 특수관계인 공저 여부(V 표시)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까? *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예 () (2번~8번 작성하여 제출)
	아니오 () (서명란만 작성하여 제출)

2.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원 : 성명/소속/부서명/직위 - 공동연구원 : 성명/소속/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 성명/소속/부서명/직위		

3. 특수관계인의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4. 특수관계인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지명 : - 논문명 : -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5.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서술

--

6.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계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특수관계인				

7.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계획	연구수행	원고초안작성	최종원고확정	전체기여도	확인서명
주저자	()%	()%	()%	()%	()%	
교신저자	()%	()%	()%	()%	()%	
공동저자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8.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용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짜깁기 표절 방지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저자 성명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